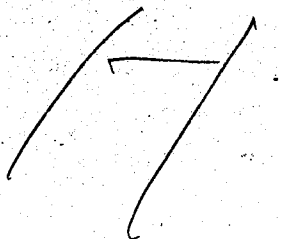


# 8人政治會談(民主民主)條文別要協議內容

1987. 8.

會議狀況室



## 8人政治會談(民正·民主)條文別主要協議內容

- 會談日字：87.8.3(2次), 87.8.4(3次)
- 協議條文：憲法前文, 第1條~第28條

會議狀況室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前文</p> <p>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 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公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적인 世界平和와 人類</p>	<p>前文</p> <p>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에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 共和國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公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여,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수하</p>	<p>前文</p> <p>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의 獨立精神위에 建立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을 이어받아 第1 共和國을 再建하였으며 4.19 義學와 5.18 光州義學로 不當한 國家權力에 對하여서는  단호히 抗拒하는 國民의 權利를 克明히 하였고, 軍人의 政治介入을  단호히 反對하고 文民政治의 理念을 闡明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確立하며, 안으로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 및 福祉의 增進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적인 國際平和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하고 正義·人道와</p>	<p>&lt; 2次會談(87.8.3)부터 實質論議시작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광주항쟁  삼엄問題 이 問題는  잠시  거론되었으나  추후  論議키로 함.</li> <li>○  저항권  삼엄問題 * 結果 : 양측  의견이  대립되어  차후로  미룸. ○  民正 : 基本權의  침해시  國民의  자구책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저항권을  이해할수  있으나  혁명적  정무수단의  발의를  주고  실정법상  요건을  갖추지  어려워  반대 ○  民主 : "盧선언"이  바로  국면저항권을  인정할것이  라는  입장  개진.</li> <li>○  軍의  政治介入  禁止問題 * 結果 : 合意를  보지  못함. ○  民正 :  軍의   정치개입금지 는  강연한  것으로서  國의   전문에  삼엄할  필요가  없다는  立場  개진. ○  民主 :  軍의   정치개입금지 의  전문삼엄을  최근의  실례(박희노  육군장모총장의  발언)을  들어  강력  주장</li> </ul>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 行 憲 法	憲 法 改 正 試 案		主 要 協 談 內 容
	民 主 正 義 黨	統 一 民 主 黨	
<p>共榮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1960年6月15日, 1962年12月26日과 1972年12月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0年10月25日</p>	<p>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衡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 年 月 日</p>	<p>同族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이루기 위하여 <u>一切의 政治報復은 이를 禁止할 것을 宣言하고</u> 1948年7月12日에 制定된 憲法을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年7月 日</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定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第1章 總綱</p> <p>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p> <p>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p>	<p>第1章 總綱</p> <p>第1條 (現行과 같음)</p>	<p>第1章 總綱</p> <p>條1條 (現行과 같음)</p>	
<p>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p> <p>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p>	<p>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p> <p>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u></p>	<p>第2條 (現行과 같음)</p>	<p>○ 在外國民保護 (民主第2條 2項)</p> <p>* 結果 : 民主에서 民主案에 增設되기로 의견공조</p>
<p>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p>	<p>第3條 (現行과 같음)</p>	<p>第3條 (現行과 같음)</p>	
<p>(新 設)</p>		<p>第4條 國家는 民族統一을 指向하고 平和的 統一政策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努力한다.</p>	<p>○ 平和的 統一政策 수립 시행 (民主第4條 新設)</p> <p>* 結果 : 民主에서 "自由民主主義的" 이란 詞句를 명시하는 案에서 民主案 第4條 新設 增設 經로</p>
<p>第4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p>	<p>第4條 (現行과 같음)</p>	<p>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定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②國軍은 <u>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u>		②大韓民國의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 <u>어떠한 理由로도 政治에 介入하여서는 아니된다.</u>	○ 國軍의  징복금지 禁止문제 (民主第5條 2項) * 結果 :  충분히 討議를 했으나 合意를 보지 못함 ○ 民主 :  現行과  같이 할 것을 주장 ○ 民主 :  前文에서와  같이  軍의  징복금지  조항을  삽입  주장
第5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5條 (現行과  같음)	第6條 (現行과  같음)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6條 (現行과  같음)	第7條 ①-② (現行과  같음)  ③公務員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其  財産을  公開	○ 公務員의   재산공개  문제 (民主第7條 3項) * 結果 :  이  部分의  民主案을  삭제하고  現行대로  民主案을  강硬의  검토기로  함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한다.	
<p>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p> <p>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p> <p>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p> <p>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放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p>	<p>第7條 ①-③ (現行과 같음)</p> <p>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p>	<p>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p> <p>②政黨의 目的, 組織, 活動은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必要的 組織을 가져야 한다.</p> <p>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p>	<p>○ 政黨의 目的部分 (民主第8條2項) * 結果 : 民主案에서와 같이 "目的"을 넣기로 同意의 意見 有함</p> <p>○ 政黨의 解散問題 (民主第7條4項) * 結果 :  충분히 討論했으나 合意점을 찾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 : 本안 상황을  고려할 때 公산당의 改進黨을  허용하는 것은 問題임을 지적하면서 政黨의 目的, 活動이 民主國 基本秩序에  위배될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입장 표명</li> <li>○ 民主 : 民主의 基本 立場에는  수긍을 하지만  憲法  修正  案  中  政黨  解散  問題  中  民主  黨  側  에서  보듯이  妥協  할  소  지가  더  많으며  야당  關係의  무거움  으로  示될  수  있음  을  지적</li> </ul>

< 以上까지 2次會談에서 論議 >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第8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現行과 같음)	第9條 (現行과 같음)
<p>第2章 國民의權利와義務</p> <p>第9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p>	<p>第2章 國民의權利와義務</p> <p>第9條 (現行과 같음)</p>	<p>第2章 國民의權利와義務</p> <p>第10條 (現行과 같음)</p>
<p>第10條 ①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p> <p>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p>	第10條 (現行과 같음)	第11條 (現行과 같음)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p> <p>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p>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強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p> <p>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p> <p>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p>	<p>第11條 (現行과 같음)</p>	<p>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 保安處分, 強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p> <p>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p> <p>③逮捕·拘束·押收·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p>	<p>○處罰과 保安處分 문제 (民主 第12條 1項)</p> <p>* 結果 : 합의를 오지 못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 : 現行의 法律에 의한 處罰과 保安處分은 人權유권과 精神적 苦痛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刑의 宣告에 의하지만 處罰을 받지 않을 것을 주장</li> <li>○ 民主 : 반국가사범, 精神결환자 等으로 處罰하고도 精神적 苦痛은 凶惡의 罪人에 對해서는 法律의 宣告 이전에 法律으로 處罰하는 것이 實效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現行대로 할 것을 내세움</li> </ul>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以上の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p> <p>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p> <p>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外에 依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p> <p>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p>	<p>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을  당하지 아니한다.</p> <p>逮捕·拘禁을 당한 者의 家族等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通知되어야 한다.</p> <p>⑥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p> <p>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禁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p>	<p>에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p> <p>○④法官의 令狀에는  믿을 만한 證據에 依하여 犯罪가 되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하며, 適法한 節次와 方法에 依하지 아니한 令狀의 發付와 執行은 禁止한다.</p> <p>⑤누구든지 그 理由의 告知를 받지 아니하거나 즉시 辯護人과의 接見·交通 그 밖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保障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形態로도 連行·逮捕·拘束을 當하지 아니한다.</p>	<p>○令狀制度 問題(民主第12條4項) * 結果: 合意를 보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民主: 비밀성상 악용 우려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 집행은 금지한다"는 조항의 新設을 주장</li> <li>○民主: 취지는 이해하나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사항이라고 반대</li> </ul> <p>○구속적부심 제한 확대문제(民主第11條6項, 民主第12條7項) * 結果: 民主案에 肯定的  의견집권을 보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民主: 現行의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li> <li>○民主: 民主도 肯定的  의견 집권</li> </ul>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議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p>	<p>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로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p>	<p>⑥누구든지 逮捕·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p> <p>⑦누구든지 逮捕·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p> <p>⑧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이거나 違法</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u>한 方法에 의하여 수집된 證據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u></p>	<p>○ 證據能力 제한 문제 (民主第12條 8項)                      * 結果: 中立的 討論을 꾀어 強의를 보지 못함                      ○ 民主: 法官自由心證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원의 성격상 이 조항은 지나치고 반대. 방인이 불립했는데 증거가 적법고려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증거로 인정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개선                      ○ 民主: 절도형외자를 수사하던 중 가택수색에서 理想시 적어 나왔다고 보안법을 적용하는 후예나 強경 수사 등을 통한 법안제포 등을 예로 들면서 위법한 方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주장.</p>
<p>第12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 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 또는 財產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爲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p>	<p>第12條 (現行과 같음)</p>	<p>第13條 (現行과 같음)</p>	
<p>第13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p>	<p>第13條 (現行과 같음)</p>	<p>第14條 (現行과 같음)</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現行과 같음)	第15條 (現行과 같음)	
第15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 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現行과 같음)	第16條 (現行과 같음)	
第16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現行과 같음)	第17條 (現行과 같음)	
第17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7條 (現行과 같음)	第18條 ①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②郵便物의 檢閱, 電信電話의 盜聽, 信書의 開披는 國家의	○ 우편물의 檢閱등의 問題 (民主第16條 2項) * 結果 : 合意를 보지 못함 ○ 民主 : 國民이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할 권리가 保障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檢閱 금지 규정은 불필요하며 下位法으로 制定해도 되나며 반대입장 ○ 民主 : 檢閱 도장을 强하는  현실이므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安全과 公共의 秩序를 害할 明白하고 現存하는 危脅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p>	
第18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現行과 같음)	第19條 (現行과 같음)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9條 (現行과 같음)	第20條 (現行과 같음)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映画·演藝에 對한 許可·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定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다만,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畫나 演藝에 대한 檢閲을 할 수 있다.</p> <p>③新聞·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編輯·編成의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한 制度)는 法律로 定할 수 있다.</p> <p>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各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아니한다.</p> <p>③言論, 出版, 映畫, 演藝는 他人의  명예와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p>	<p>○ 映畫·演藝의 사전검열 및 언론피해배상청구 문제 (民正 21條 2·3項, 民正 20條 2·4項) * 結果: 영화선연의 사전검열을 주장했던 민정측은 이를 선검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민주책을 강력하게 강요하는 대신 "영화선연은 라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책과 "영화선연이 라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정 주장을 합쳐 단서조항을 수적으로 합. (상당 합의)</p> <p>○ 新聞·통신·방송의 시설기준 문제 (民正 20條 3項) * 結果: 부분적으로 양당 의견결근 즉 통신·방송의 경우 그 성격상 일정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정안에 민주가 동의 · 민주: 통신·방송의 일정시설 기준 필요성은 호준과정에서 민정에 동의했으나 (신문) 필대로 규제해서는 안되며 언론자유권 원칙에서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조항은 자유민주체제의 각자 생존 근거 말하자고 강력히 주장 · 민정: 신문 통신·방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시설기준이 필요하다.</p>
<p>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p>	<p>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p>	<p>第22條 ①-② (現行과 같음)</p>	<p>○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 신설 문제 (民正 21條 2項) * 結果: 民正책을 민주에서 받아들임.</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第22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p> <p>②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및 關係者의 利益을 正當하게 衡量하여 法律로 정한다.</p>	<p>第22條 ①-② (現行과 같음)</p> <p>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p>	<p>第23條 ①-② (現行과 같음)</p> <p>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p>	<p>○ 재산권 수용·사용 제한시 보상문제 (民主 22條 3項, 民主 23條 3項)</p> <p>* 結果 : 民主案의 表現이 간결히 잘 정리되었으므로 民主에서 받아들임</p>
<p>第23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p>	<p>第23條 (現行과 같음)</p>	<p>第24條 모든 國民은 18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p>	<p>○ 선거연령 문제 (民主 24條)</p> <p>* 結果 : 여겨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사안상의 이유 뒤로 넘김</p>
<p>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p>	<p>第24條 (現行과 같음)</p>	<p>第25條 (現行과 같음)</p>	
<p>第25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p>	<p>第25條 (現行과 같음)</p>	<p>第26條 (現行과 같음)</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p> <p>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p>			
<p>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u>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是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 哨所·有害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 軍事施設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非常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u></p> <p>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p>	<p>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u>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是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捕虜·軍事施設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u></p> <p>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u>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 法院이 權限을 正常的으로 行使할 수 없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軍法會議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u></p> <p>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p>	<p>○ 非常戒嚴下의 軍법회의 裁判權문제 (民正 26條2項, 民主 27條2項)</p> <p>* 結果: 의견결론을 얻지 못하고 계속검토하기로 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지라도 법원이 경산의요 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단 주권은 일반법원의 재판에 양도하도록 하고 주장</li> <li>○ 民正: 비상계엄령의 의의가 갖는 근본취지에서 볼 때 일반법원에 그 재판을 위임하는 것은 조급 문제가 있다.</li> </ul> <p>○ 軍법회의의 裁判權문제 (民正 26條2項, 民主 27條2項)</p> <p>* 結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포로 군사시설에 관한 죄"는 民正案대로 延장인일지라도 軍법회의 裁判을 받기로 의견일치를 봄.</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議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p>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p>	<p>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p>	<p>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p>	<p>○ 형사 피해자 진술문제 (民正 26條 5項) * 結果 : 새로 신설한 民正案을 民主黨이 받아들여  의견을 모음</p>
<p>第 27 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第 27 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嫌疑가 없음이 判명되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第 28 條 刑事被告人 또는 被疑者로서 拘束되었던 자가 無罪判決 또는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 處分)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 형사보상 청구권 문제 (民正 27條, 民正 28條) * 結果 : 民正案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기로 함 ○ 民主 : 형사보상 청구 대상에 불처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하려고 주장 ○ 民正 : 불처 처분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중 무형의 문제가 있으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나, 기소금지, 기소유예, 공소권 무효의 경우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개진</p>
<p>第 28 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第 28 條 ①公務員이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p>	<p>第 29 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p>	

憲法改正試案對比表

現行憲法	憲法改正試案		主要協談內容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을 請求할  경우의 賠償 基準과 方法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 軍人·軍務員 등이 職務執行과  관련 받은  손해에  대하여  賠償에  상  限을  設치  할  문제  (  民正  29  條  2  項 ) *  結果 :  종의  연구  결과에  함 ○  民正 :  전후  훈련중  職務執行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자위  행위에   따라   차이를  유지  할  필요성  있는  점을  認과  함 ○  民主 :  (종의  연구에  따른  안정함) 향후  연구  필수  조건  <  以上까지  3次會談에서  論談 >
(新 設)	第 29 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로  부터  救護를  받을  수  있다.		
第 29 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 30 條 (現行과  같음)	第 30 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